

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신탁형)설명서」 신구조문대비표

구분	현행	개정(안)	비고
2. 가입요건 서민형 소득 기준 연도	(신설)	※ 서민형 소득 기준연도 - (상반기) 가입신청일, 연장신청일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적용 - (하반기) 가입신청일, 연장신청일 직전년도 소득 확인 시 전년도 소득적용 ※ 상반기 가입신청, 연장신청 시 하반기에 직전년도 소득 확인과 연관 없이 전전년도 소득이 적용됩니다. ※ 서민형 가입 후 만기연장 시 일반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만기연장 후의 유형으로 세제혜택 적용됩니다	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(대통령령)제 93 조 10 에 따른 특례적용 2024.04.01 신설
2. 가입요건 손익통산	(신설)	※ 비과세 한도 적용 시 이자소득, 배당소득 순으로 적용하며,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 (분리과세 소득세액 만큼을 한도로 공제 가능. [2025.07.01 부터 시행]) ※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4% 로 적용됩니다.	소득세법시행령 제 189 조의 2③ 2025.7.1 시행에 따른 변경

5. 납입한도 및 계약해지 중도인출	(내용추가)	중도인출 시 인출가능금액에서 해지 시 납부예상 세액만큼 인출 제어됩니다.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는 일반과세 세율로 적용되며, 3년 초과 시에는 비과세한도 적용 후 분리과세 세율로 적용됩니다.	설명서 문구에 대한 보완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